

국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강북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추진 철저

1. 기획예산과-14355(2015. 09. 30. 구청장방침)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추진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제정된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30개를 대상으로 우리구 도입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니,
3.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부서에서는 자체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불가 25개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임을 감안하여 **소관국장 재검토를 거쳐 불임 검토의견서를 2016.1.29(금)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검토결과 1부
 2. 1차 검토의견서(30개조례) 1부.
 3.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강북구청장

수신자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장, 세무과장, 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도시계획과장, 디자인건축과장, 환경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강북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강북구보건소장(의약과장), 강북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최용훈** 정책개발팀장 **장태식**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기획재정국장 전결 01/21 이상형

협조자 법무팀장 **이기호**

시행 기획예산과-1006 () 접수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http://www.gangbuk.go.kr>

전화 02-901-6157 / 전송 02-901-6150 / yghoon@gangbuk.go.kr / 대시민공개